

加盟契約書



목 차		
가맹계약서 전문		[전문]..... 2
제 1 장 총칙	제 01 조	[계약의 목적]..... 4
	제 02 조	[정의]..... 4
	제 03 조	[가맹사업의 약정]..... 6
	제 04 조	[계약의 상호독립성]..... 7
	제 05 조	[신의성실] 7
	제 06 조	[가맹사업 당사자의 지위] 7
	제 07 조	[당사자의 준수사항]..... 8
	제 08 조	[통지] 8
	제 09 조	[완전합의와 일부무효]..... 9
	제 10 조	[영업지역]..... 9
	제 11 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0
제 2 장 가맹계약의 기본원칙	제 12 조	[계약기간, 갱신 및 계약종료 등]..... 11
	제 13 조	[교육훈련]..... 12
	제 14 조	[시정조치 등]..... 13
	제 15 조	[경영지도, 품질관리 및 시정권]..... 13
	제 16 조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14
	제 17 조	[로열티]..... 15
	제 18 조	[광고비]..... 15
	제 19 조	[대금지급]..... 16
	제 20 조	[물품의 공급]..... 17
	제 21 조	[계약의 일반적 해지]..... 17
	제 22 조	[계약의 즉시해지]..... 19
	제 23 조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19
	제 24 조	[손해배상]..... 20
제 3 장 가맹사업의 내용	제 25 조	[점포시설 및 주방기기]..... 21
	제 26 조	[판촉]..... 21
	제 27 조	[보고의무]..... 22
	제 28 조	[복장관리]..... 22
	제 29 조	[영업의 양도]..... 23
	제 30 조	[영업의 상속]..... 23
	제 31 조	[경업금지]..... 24
	제 32 조	[점포전화번호]..... 24
	제 33 조	[제조물책임]..... 24
	제 34 조	[영업비밀준수]..... 24
제 4 장 기타 분쟁해결절차 등	제 35 조	[하누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25
	제 36 조	[분쟁의 해결]..... 25
	제 37 조	[기타사항]25
별첨 1		[영업방침]26
별첨 2		[시정조치 및 경고장]32
별첨 3		[교육입소 명령서]..... 33
별첨 4		[점포위치도]34

- 전 문 -

1.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은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프랜차이즈기업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본 건 [하누소] 가맹사업을 개발하였으며,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유일한 고유하고 독창적인 지식과 경험 및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2.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은 세계적인 브랜드인 "하누소"라는 상표 · 서비스표를 가지고 상품의 공급, 서비스의 제공 및 유통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체제와 가맹점 운영을 위한 회계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표준적이고 독특하며 통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맹점에 공급할 준비를 갖추었다.
3.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은 "하누소" 라는 상호 · 상표 · 서비스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와 관련된 이익 및 위 상호 · 상표 및 서비스표 등과 관련되는 파생적 상표나 노하우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유권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4.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의 위와 같이 형성된 명성과 신뢰를 고객에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하누소" 이름으로 기획되고 집행되는 모든 사업활동" 은 ① 결국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의 명성과 신뢰"와 관계되며 "직접적인 하누소 사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는 이의 사용권을 갖고 운영하는 대신 하누소 사업의 업무수행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의 "모든 하누소 사업의 영업방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② 또한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와 교육 및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이러한 교육 및 통제를 전적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한다. ③ 여기서 말하는 "하누소 사업의 영업방침"이라 함은,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주)하누소푸드시스템에서 규정한 매뉴얼에 의한 정확한 제품의 조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식품취급 내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된 복장착용, 위생, 청결유지, 노후된 시설을 새로이 리뉴얼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행위, 가맹본부와 하누소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훼손시키지 않는 행위, 가맹점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지도하에 광고 내지 판매촉진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 등에 관한 방침을 말한다.

5.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의 "하누소" 라는 상표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서비스와 가맹점의 운영에 관하여 가맹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것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도의 통일성과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로부터 그에 대한 명성과 신뢰를 얻고 있다.
6.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하누소 브랜드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하누소 상표 및 영업표지", "하누소 사업의 시스템과 하누소 브랜드의 가치 및 명성과 신뢰" 등을 인정하여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에 동의하고, 가맹점의 운영 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한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의 "하누소 사업의 영업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누소 사업의 운영권한을 위임 받는 것임을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본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7. 그러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인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의 하나의 맹점으로써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의 지도와 통제를 철저히 따를 것을 약정한다.
8. (주)하누소푸드시스템과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의 원천임을 인식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단독 또는 연대하여 하누소 사업 및 가맹본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체적 유대관계로서의 가맹사업 관계를 유지 ·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정한다.
9. 본 계약서는 하누소 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로서 추가사항의 경우 별첨하여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상호간에 합의한다.

제 1 장 총칙(總則)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하누소푸드시스템[이하 "갑"이라 함]과 "갑"으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하누소" 라는 상호 · 상표 · 서비스표 등의 지적재산권 및 상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독립된 사업체인 하누소 점[이하 "을"이라 함]이 다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하누소 사업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나은 하누소 사업의 향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갑"이 "을"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 · 상표 · 서비스표 · 간판(이하 "영업표지"라 함)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부재료 등 제품포함)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갑"이 정한 하누소 사업의 미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광고에 의한 브랜드 가치 제고 · 서비스 품질우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시설 재투자 · 고객 유치를 위한 판촉마케팅 ·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기준 운영 등 보편적인 기업 활동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서, "갑"은 "을"에게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하누소 사업의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고객을 위한 영업방침 등을 통한 통제 등)를 실시하며,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입비, 로열티, 광고비, 판촉비 등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자"라 함은, 하누소 사업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인 "을" 을 말한다.
3. "가맹본부"라 함은, 하누소 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갑" 을 말한다.
4.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갑"과의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 · 교육· 통제 등 "갑"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갑"과 동일시 된다.

5. "영업방침"이라 함은, 별첨과 같이, 고객에 대한 하누소 브랜드의 가치, 신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이 준수하여야 하는 하누소 사업 및 가맹점운영 등에 관한 "갑"의 방침을 말하며, 계약기간 중 서면 또는 POS,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의한 통지로서 변경될 수 있다.
6. "상품"이라 함은, "갑"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메뉴품목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이라 함은 상품제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인 냉동품, 냉장품, 일반원료 및 포장재료, 소모품 등을 말한다. 또한 "물품"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제품, 음료수, 주류, 판촉물 등 모든 유·무상의 재화를 총칭한다.
7. "을"이 "갑"에게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가입비 : 하누소 영업표지의 최초 사용허락의 개시 및 가맹사업 운영 노하우의 이전에 대한 1회성 대가로서 계약체결 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가맹점이 개설된 후에는 "을"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2)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엔 "을"이 제23조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금원이다. 이것은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대금이 아니며, "을"은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3) 로열티 : 하누소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가로서 "을"이 "갑"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매월 지급되면 소멸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4) 광고비 : 하누소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하여 또는 고객에게 감사표현을 하기 위하여 각종 매체(TV, 신문, 잡지, 인터넷 및 모든 활자매체와 전자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광고에 대한 비용으로, "을"이 광고비 명목(모델료, 제작비, CF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으로 "갑"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5) 판촉비 : 고객에 대한 감사, 매출증진, 판매촉진 등의 모든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으로서 "을"이 "갑"에게 판촉비 명목으로 납입하고

나 "을"이 자체적으로매월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금원을 말하며, 납입된 판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반환 되지 않는다.

(6) 교육비 : 제13조 [교육훈련]에 의해 "을"이 받는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서 "갑"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교육종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을"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8. "교육"이라 함은 가맹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을"을 위한 "갑"의 지도 및 훈련을 말한다.

(1) 기초과정교육 : 가맹계약 후 하누소 가맹점의 운영노력 습득을 위해, 조리, 서비스, 청결 교육 등 가맹점 경영자로서의 기초 소양과 사업가의 마인드를 배양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자와 실제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약갱신교육 :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될 경우 계약기간종료 10일 전에 기존의 가맹 계약의 내용 및 변경된 계약의내용을 고지하고 향후 계약기간 내에 적용되거나 시행예정인 "갑"의 정책 등을 "을"에게 알려주는 교육

(3) 보수교육 : 정보제공, 의사전달, 시정명령 등 "갑"의 교육소집 명령에 의한 모든 교육(가맹점간담회, 사업전진대회 등 명칭 여하를불문)을 통칭한다.가맹점 운영 중 매년 "갑"의 영업방침(매뉴얼 포함)등에 대한 변경사항 또는 가맹점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마케팅교육, 경쟁력 강화,판매기법, 서비스 향상, 시스템, 신제품 교육, 매뉴얼 준수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또한 "을"이 가맹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교육을 통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을"의 실제 운영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4) 기타교육 : "을" 또는 "을"의 직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의 운영시간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가맹점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

9. 주방기기"라 함은 상품제조에 필요한 기기류(냉면기,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작업대 등)를 말한다. "집기비품"이라 함은 상품 제조 및 점포운영에 소요되는용기 등 기타 비품류(접시, 주방접시, 용기, 믹싱볼, 밀폐용기, 스텐

4. "갑"과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사업자 표시란에 표시된 계약자 또는 실제 운영자에 한하므로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한 계약자 또는 실제 운영자만이 "갑"과의 모든 협의를 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의 상호독립성)

1. 하누소 사업은 "갑"의 경영지도 및 통제와 "을"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으며, "을"의 노력 없이 "갑"의 지도 및 통제만으로 가맹사업은 성공할 수 없고, 본 계약의 체결이 "을"의 가맹사업 성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독자적으로 하누소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의 손익가능성과 파악하였으며, "갑"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도 이윤이나 성공가능성에 대한보장을 받지 않았고, 본 계약의 체결 전에 "갑"으로부터 본 계약서를 교부받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갑"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3.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전에 해당 상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 매출이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분석자료(상권분석에 의한 예상매출 및 수익률 관련서류 등)등이 "갑"이 "을"에게 예상매출이나 수익률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체결 후 예상 매출이나 수익률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을"은 하누소 사업에 관한 "갑"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지식과 경험 및 기술과 노하우 등의 지도 및 통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경영주체로 사업에 임할 것을 약정하며, "갑"의 지도 및 통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 5 조 (신의성실)

"갑"과 "을"은 계약의 상호독립성에 기인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가맹사업 당사자의 지위)

1. "갑"과 "을"은 독립된 사업체로서, "을"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경영하고 소비자와의 각종 분쟁 등에 대하여도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을"은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을"의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또한 "을"의 직원과 관련된 노동법 등 관련 법령상 문제에 대하여 "갑"은 아무런 책임 없다.

제 7 조 (당사자의 준수사항)

1. "갑"은 하누소 사업에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한다(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5조 참조).
 - (1) 하누소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2) 상품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3)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4) "을"에 대한 교육, 훈련.
 - (5) "을"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2. "을"은 하누소 사업에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참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계약 제 12조 이하에서 상세하게 정한다.
 - (1) "갑"의 영업방침의 철저한 준수.
 - (2) 하누소 사업의 통일성 및 "갑"의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 (3) "갑"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4) "갑"이 상품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5) "갑"이 "을"의 가맹점 설비와 외관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6) 취급상품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갑"으로부터의 사전 서면 승인.
 - (7)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갑"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8) "을"의 업무현황 및 전 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갑"의 임직원 및 기타 대리인의 "을"의 가맹점 출입허용.
 - (9)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을"의 가맹점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 (10) 계약자 및 실제운영자가 "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11) "갑"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갑"에 대한 영업 표지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 8 조 (통지)

1. 본 계약에 의한 각종의 통지는 본 계약서에 표기된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점포 소재지에 대하여 문서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을"에게 문서 같음하여 POS나 홈페이지(공지사항)로 통지할 수 있다.
2. 변경된 통지처를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지 않는 일방은 전 항의 방식에 의한 통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의 그 문서는 안내문,공문,내용증명 등 우편에 의한다.

제 9 조 (완전합의와 일부무효)

1.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규정한 완전한 계약이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2. 본 계약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효력을 상실하고, 그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제 10 조 (영업지역)

1. "갑"은 "을"의 가맹계약 체결시 인구수 1만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정한다.
2. 상권특성상 협의 변동 가능하다. .

제 11 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 "을"은 "갑"으로부터 승인 받은 영업표지 및 하누소 사업과 관련된 "갑"의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제3자가 "갑"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침해 사실을 알리고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갑"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3. “갑”이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을”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가맹계약의 기본원칙

제 12 조 (계약기간, 갱신 및 계약종료)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고,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이다. 단,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된다.

구 분	일 자	비 고
최초계약일	년 월 일	2년
최종 제 1 차 계약갱신일	년 월 일	1년
최종 제 2 차 계약갱신일	년 월 일	1년
최종 제 3 차 계약갱신일	년 월 일	1년
최종 제 4 차 계약갱신일	년 월 일	1년
최종 제 5 차 계약갱신일	년 월 일	1년

2. "을"이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갑"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을"이 제2항의 갱신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갑"은 계약갱신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지만,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제12조 [계약기간 및 갱신 등] 제5항에 정한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거절통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갑"이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까지 사이에 "을"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 또는 "을"에게 천재지변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갑"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을"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하누소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갑"의 영업방침 중에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②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③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④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4) 제21조 [계약의 일반적 해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 해지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5) 제22조 [계약의 즉시해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즉시 해지되지 않은 경우 즉시 해지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6.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증가될 수 있다.
7.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방침의 변경 내지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서면 또는 POS 공지 등으로 그 변경사항을 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5항에서 정한갱신거절사유 중 "갑"의 영업방침의 변경통지를 사전에 한 것으로 본다.
8. "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갑"의 계약갱신교육을 수료하여야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단, 교육의 진행 일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1. "을"은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한 증명서를 점포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기초과정교육 인원은 2명으로 하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가맹점의 운영, 제품의 조리, 홀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단, 홀 사원의 경우 "갑"의 S/V 또는 지정요원 등을 통하여 서비스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만약 "을"이 본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은 "을"에게 교육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통보된 내용에 따라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을"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연간 교육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교육은 일정에 맞추어 공시하여 진행되며, "을"은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을"은 계약갱신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을"이 계약갱신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교육비용은 "갑"이 책정하여 "을"에게 통지하며, "을"이 부담한다.

제 14 조 (시정조치 등)

1. "을"이 제7조 [당사자의 준수사항] 제2항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의 영업방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시정조치 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2. "갑"은 "을"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고장을 발부할 때 교육입소를 명할 수 있다. 교육은 연간 지정된 교육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을"은 교육을 성실하게 수료하여야 한다.
3. "을"이 교육입소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이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5 조 (경영지도, 품질관리 및 시정권)

1. "갑"은 "을"에 대하여 Supervisor(경영지도요원, 품질관리요원, 모니터요원 등, 이하 통칭하여 "S/V"라 함)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도·품질관리를 하며, 기준에 미달 또는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도

"갑"은 가맹점의 경영지도와 "을"의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확인 할 목적으로 슈퍼바이저 또는 "갑"소속직원을 파견하여 지도점검을 하며 "을"은 "갑"소속의 슈퍼바이저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을"의 매장을 방문하는 "갑"의 직원은 경영지도의 목적에 따라 주방/ 홀/ 기타 장소의 확인, 물품재고 상태확인, 메뉴조리 상태확인, 매출장부 및 POS 자료열람, 업무상 필요한 사진촬영 및 "건본"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면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상품소개와 개개 상품특성을 창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이에 대한 경영지도[상품화(Merchandising)]

② 점포특성과 시장분석에 따른 전략 및 전술에 대한 경영지도 [시장조사(Market-Research)]

③ 상품의 판매증진 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판촉(Sale-Promotion)]

④ 하누소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 운영사항에 대한 분석 및 경영지도

(2) "갑"은 S/V를 통하여 '가맹점 평가 List(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점검표)'에 의해 매뉴얼 준수, 조리, 서비스 이행 여부, 가맹점포의 청결 및 위생상태, 기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지된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갑"은 품질관리요원을 통하여 "을"의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 또는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을"은 S/V의 경영지도 또는 품질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정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S/V가 지도하는 위생, 조리, 청결, 서비스, 판매방법, 시설물의 개보수 등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이 "갑"에게 S/V의 파견을 요청하여 S/V가 파견된 경우에 소요비용은 "갑"이 별도로 정하며 "을"이 부담한다.
4. S/V가 "을"의 가맹점을 점검한 후 "갑"이 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침 등을 준

3.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거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입비가 면제된다. 그러나 "을"이 "갑"의 서면 승인 없이 다음 각 호를 행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1) 동업자간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부부를 포함).
- (2) 직계존비속간에 승계되는 경우.
- (3)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변경 되는 경우.
- (4) 개인이 법인설립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될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명의로 변경될 경우.
- (5) 기존점포가 대표자 명의변경 없이 점포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할 때.
- (6) 동일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나 대표자의 명의를 법률적인 제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 단, 계속적으로 가맹점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추후 가입비를 징수한다.

4.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을"이 제23조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액(간판 철거 등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5. 제23조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에서 정한 의무(간판 철거, 매뉴얼 반납 등)의 이행 및 조치가 완료된 후에야 계약이행보증금의 잔금은 반환되며,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 17 조 (로열티)

1. "갑"의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가로, "을"은 "갑"에게 매월 다음 금액을 로열티로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세별도로 한다.

"을"의 매출액 × 1.0% 또는 "을"이 공급받은 물품대금액 × 2.5 × 1.0%

2.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을"의 당월 POS상 판매된 총매출액을 월 매출액으로 정하며, 이를 위하여 익월 5일까지 "을"은 "갑"에게 POS상 총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단, POS상 총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나, POS상 총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액의 '2.5'를 곱한 금액을 총 매출액으로 본다.

제 18 조 (광고비)

1. “갑”은 기업이미지 광고와 상품광고를 총괄하며(순수 가맹점 모집광고는 제외), 창작내용과 광고에 사용되는 모델초상권 및 소재와 매체, 광고시행, 배분 등에 관한 모든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2. “을”은 “갑”이 전 매장의 통일화, 고객만족 및 매출증대 등의 목적을 전사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고객만족 및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그 예외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항에 의한 마케팅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하누소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가맹점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갑”의 총괄 하에 진행되는 전국적인 광고비용에 대하여 “갑”과 “을”은 이를 분담(순수 가맹점 모집광고는 제외)하며, “을”이 분담하는 비용을 “광고비분담금”이라 한다. “을”이 분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을"의 매출액 × 1.0% 또는 "을"이 공급받은 물품대금액 × 2.5 × 1.0%

4. "을"은 "갑"에게 매월 하누소 브랜드 광고를 위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세별도로 한다.
5. “을”은 자신의 판단과 비용에 의한 지역 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그 행사의 목적, 내용 및 홍보물 일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갑”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을”의 홍보내용이 “갑”의 경영방침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은 “을”의 홍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을"의 당월 POS상 판매된 총 매출액을 월매출액으로 정하며, 이를 위하여 익월 5일까지 "을"은 "갑"에게 POS상 총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단, POS상 총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나, POS상총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액의 '2.5'를 곱한 금액을 총 매출액으로 본다.
7. "갑"은 하누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를 본광고비로 집행할 수 있다.

8. 광고비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케팅운영위원회(명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를 구성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광고비의 운영에 대하여 위임한다.

제 19 조 (대금지급)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일에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기초과정교육비를 현금 또는 수표로 "갑"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2. "을"이 공급받는 물품대금은 물품의 인수 즉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갑"의 경리부서에 입금하여야 한다.
3. "을"은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등 시설비(주방집기, 비품 등의 대금 포함) 중 50%를 공사착공 전까지, 그 잔금은 공사완료 시에 "갑"의 지정계좌나 경리부서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을"은 제17조의 로열티, 제18조의 광고비를 익월 10일까지 "갑"의 지정계좌나 경리부서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을"이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기초과정교육비, 물품대금, 공사대금, 로열티, 광고비등을 본조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본 조의 대금지급이 연체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대금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대금의 년 24%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7. 연체대금 채권의 상황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비용, 이자 및 원금의 선발생의 순으로 처리한다.
8. 기존 가맹점을 양수한 가맹점사업자는 가입비는 유효한 것으로 하며,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등은 납입하여야 한다.
9. "갑"의 사전 서면 승인 하에 양도 양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갑"은 양수된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과 관련하여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상의 내구연한 등을 기준으로 영업방침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 20 조 (물품의 공급)

1. “갑”은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만족을 위하여 외부사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 받은 “을”은 해당 품목에 대하여는 절대 사입 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갑”은 “을”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공급받은 물품을 타인(타 가맹점 포함)에게 제공,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을"은 물품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그 하자 유무를 수령 후 12시간 이내에 S/V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반품할 수 있다. 반품절차는 "갑"의 반품규정에 의한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유통기간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해당 물품공급자에게 통지하면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이 제3항의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반품·수량보충·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갑"이 물품의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을"은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갑"에게 반품/ 수량보충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약의 일반적 해지)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다음의사유(즉 "을"의 계약위반사실)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을"이 위 유예기간 내에 시정하지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갑"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 (2)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물품대금, 시설비, 로열티, 광고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 교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① 제13조 [교육훈련]에 정한 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 ② 제14조 [시정조치 등]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S/V의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4) QCS와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① "갑"의 '가맹점 평가 List(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점검표)'에 의한 경고조치등을 받은 경우.
- ② "갑"이 정한 품질기준(제품조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③ "을"이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유통기한을 넘긴 물품을 보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④ 제25조 [점포시설 및 주방기기]에 의한 점포시설, 주방기기 등의 교체 요구에 불응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⑤ "갑"이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면도 불량, 슬리퍼 착용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⑥ 점포 내에서 또는 근무 중 외부에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5)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① 동일한 사항으로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점포운영 등에 관한 클레임)이 발생하여 "갑"으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②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담당 S/V가 확인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내용확인을 못한 경우.

(6)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① 제26조 [판촉]에 정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광고물 제작 시 "갑"의 BI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7) 가맹점포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① "갑"이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② 인근 하누소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모든 운영사항에 대하여 가맹점간으로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위반하거나, 한우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③ "을"이 POS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8) 기타 "을"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을"이 "갑"의 영업방침 또는 정책을 거부·철회하자고 선동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10) "을"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기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11)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갑"과 다른 가맹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을"이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등으로 "갑"의 가맹사업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13) 기타 "을"이 부도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갑" 또는 다른 가맹점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전 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갑"은 이를 미리 "을"에게알리고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해지와 함께 "갑"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22 조 (계약의 즉시 해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갑"의 가맹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 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을"이 본 조 제1항 각호의 위반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
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 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
법이나 형태로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7)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에게 파산·회생 등의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
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
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갑" 또는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23 조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1.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을"은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이
내 "갑"에 대한 채무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채무상황이 지
연되는 경우에 "을"은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채무액
의 연 24%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을"은 "갑"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갑"의 모
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 등을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원상회복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이 제2항의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갑"이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갑"은 "을"이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 그로부터 7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 24 조 (손해배상)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을"이 제34조 "영업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가입비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가맹사업의 내용

제 25 조 (점포시설 및 주방기기)

1. "을"은 점포시설(인테리어 등) 및 주방기기의 배치 등을 하누소 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의 표준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임의로 시공하였으나 "갑"의 표준사양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사양에 부합하도록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2. 점포시설에 관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기 간	비 고
최종공사 완료일자		년 월 일	~	
리뉴얼 일자	1차	년 월 일	년	
	2차	년 월 일	년	
	3차	년 월 일	년	

3. 주방기기와 비품은 "갑"이 정하는 동종의 규격 및 Model로 설치해야 한다.

4. "을"은 다음의 품목을 교체 주기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교체주기	품 목	비고
3년	냉동냉장고	
5년	3년 및 7년의 교체주기를 제외한 주방기기	
7년	싱크대 및 작업대	

5. "갑"은 "을"에게 하누소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하누소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와 품목을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비용분담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6 조 (판촉)

1. "갑"은 하누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을"은 판매 증진을 위하여 "갑"의 지도하에 "을"의 비용으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매월 "을"의 비용("을"의 매출액 × 3% 이상)으로 판촉활동을 하여야 하며, 판촉집행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의무적으로 연2회 이상 전국규모의 판촉행사(NSP)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이 부담하는 비용은 판촉기간 "을"의 매출액의 5% 이상으로 한다. 단, 전국규모의 판촉행사(NSP)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해 매월 시행하여야 하는 일반판촉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을"의 당월 POS상 판매된 총 매출액을 월 매출액으로 정하며, 이를 위하여 익월 5일까지 "을"은 "갑"에게 POS상 총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POS상 총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나, POS상 총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액의 '2.5'를 곱한 금액을 총 매출액으로 본다.

4. 판촉의 시기 ·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마케팅운영위원회(명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가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갑"이 집행한다.
5. "을"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할인비용이나 임의로 제공하는 경품 · 기념품 등의 판촉물에 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6. "을"은 "갑"이 진행하는 판촉행사에 "갑"이 사전 서면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휴 · 폐점등 영업상 불가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을"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의 보호 및 소비자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갑"은 인근 가맹점사업자를 통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7. 판촉에 대한 모든 협의는 담당 슈퍼바이저와 공유, 진행하며 상권의 특성 혹은 매장상황에 따라 시기를 변동할 수 있다.

제 27 조 (보고의무)

1. "을"은 제15조 [경영지도, 품질관리 및 시정권]에서 정한 "갑"의 경영지도를 위하여 "갑"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가맹점 자료(POS data 등)를 "갑"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2. 상호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정보의 실시간 활용 및 가맹점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을"은 필수적으로 POS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POS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을"이 POS에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4. "을"은 POS상 소비자 매출정보, 재고관리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 "갑"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공된 정보의 내용은 가맹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8 조 (복장관리)

1. "을" 또는 가맹점의 관리자 및 직원은 가맹점 내에서나 또는 근무 중 외부에서 "갑"이 지정한 복장(유니폼 등)을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가맹점과 개인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유니폼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첨부되는 영업방침에 의하여 착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1조 [계약의 일반적 해지] 제1항 제4호에 의한다.

제 29 조 (영업의 양도)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점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수 없으며,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2. "을"은 대표자 명의변경 없이 점포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을"이 계약기간 중 점포를 매각할경우에도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영업양도 또는 대표자 명의변경의 경우에도 제16조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양수인 또는 변경된 대표자는 제19조 8항에 의거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점포매각 또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갑"이 하누소 사업을 타 회사에 양도할 경우에 본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회사에 이전된다.
6. "갑"이 하누소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영업의 상속)

1. "을"의 상속인은 "을"의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갑"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그러나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물품대금, 공사대금, 로열티, 광고비 등과 교육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주 이내에 "갑"의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만약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점 운영, 제품의 조리 등을 할 수 없다.

제 31 조 (경업금지)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이나 재산으로 "갑"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계약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을"은 운영자로 하여금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실제 운영자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2. "을"은 본 조의 경업금지의무를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2년간 부담한다.

제 32 조 (점포전화번호)

1. "을"은 "갑"의 대표 전화번호 "02-998-8363"(변경될 수 있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이 점포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번호는 가맹점의 영업개시와 동시에 "갑"의 소유로 전환하며, 사용요금은 "을"이 부담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협의한다.

제 33 조 (제조물책임)

1. "을"은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갑"은 "을"에게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갑"이 공급하지 않은 물품을 "을"이 사용하거나, 물품의보관상 또는 제품의 조리과정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4 조 (영업비밀준수)

1.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정보(매뉴얼 등)는 모두 "갑"의 소유이므로, "을"은본 계약 및 가맹점 경영상 알게 된 "갑"의 모든 영업비밀과 정보를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을"이 영업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가입비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민사·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제 4 장 기타 분쟁해결절차 등

제 35 조 (하누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1. "갑"과 "을"간의 분쟁 또는 "을"과 다른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갑"은 "하누소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광고 및 판촉과 관련하여 "갑"은 "하누소 마케팅운영위원회"(명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를 둘 수 있다.
3. 상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6 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2. 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3.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갑"과"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37 조 (기타사항)

1. "갑"이 '정보공개서'의 제공과 관련하여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인 14일을 7일로 단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는 "갑"이 가입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첨 1

[영 업 방 침]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하누소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및 효율적인 점포운영을 위해 “을”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1 조 (점포운영 일반)

1. “을”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근무자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본사물품대금 (만원/월)	점포운영인원			비고
	기본근무인원	추가운영인원	총 근무인원	
~ 3,000	8	-	8	3,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단위로 직원 1명 이상 추가 운영.
3,000 ~ 4,000	8	1	9	
4,000 ~ 5,000	8	2	10	
5,000 ~ 6,000	8	3	11	
6,000 ~ 7,000	8	4	12	
8,000 ~	8	5	13	

※ 영업시간 내 점포운영 인원을 최소(기본) 8명 이상으로 항상 유지한다.

- 점포인원 최소(기본) 6명 내에는 부부 또는 동업자가 종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원 1명이라 함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4일(일 5시간 이상 근무기준)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을”은 직원의 채용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 친권자(부모 등)의 동의서를 받은 후 채용한다.
3. “을”은 본 계약 및 가맹점 영업상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과 정보가 근무자를 통해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4. “을”은 하누소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및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운영시간을 준수한다.

- (1) 점포 오픈 시간은 오전 10:00를 준수하고, 오픈 시간 안내포지를 점포에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2)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픈 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고지(점포 전면에 안내문 부착, 전화 자동응답을 통한 안내 등)하여 클레임이 없도록 하고, "갑"(또는 담당 S/V)에 통보한다.
 - (3) 가맹점의 휴무일은 "갑(또는 담당 S/V)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점포 전면에 안내문 부착, 전화 자동응답을 통한 안내 등)하도록 한다.
5. "을"은 "갑"이 공급하는 POS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출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을 정확하게 하고, "갑"은 "을"의 POS 정보를 공유한다.
- (1) "을"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맹점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POS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POS에 입력하여야 한다.
 - (2) "을"은 POS의 소비자 매출정보, 재고관리 및 고객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공된 정보의 내용은 가맹점의 관리를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을"은 "갑"의 공급계획과 고객의 수요 충족에 필요한 적정 재고를 항상 유지한다.
7. "을"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점포 환경의 관리 및 유지를 한다.
- (1) 점포 앞 주변은 쓰레기 및 기타 지저분한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2) 점포 유리는 매일 청소하고 파손된 부분은 즉시 수리한다.
 - (3) 간판은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등갈이를 한다.
 - (4) 일몰 전 간판 및 내부 조명을 점등하여 밝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 (5) 내부 인테리어 및 디자인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파손된 부분은 본사 기준에 의거하여 즉시 보수한다.
 - (6) 집기 및 비품은 "갑"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점포운영에 부족함이없도록 보충하고 유지한다.

8. "을"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9. "을"은 설비, 집기비품, 기타 재료 및 자재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
10. "을"은 개점 전에 당일 사용할 충분한 환전을 준비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한다.
11. "을"은 개점 전에 당일 사용할 제품의 품질 및 수량을 파악하고, 전기 및 가스와 조리기기(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제 2 조 (매출 달성)

1. "을"은 고객의 주문사항을 일체 POS를 통하여 처리한다.
2. "을"은 "갑"과 "을"의 상호이익 증진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매출 및 손익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1) "을"은 "갑" 수립한 경영계획(매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계약(신규, 재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일 평균 매출액을 20% 이상 신장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계약(신규, 재계약) 체결 후 3개월 이후의 육가공제품 매출구성비가 가맹점 총 매출액의 50%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3. "을"은 신규 출시한 신제품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시식행사 등 지역 마케팅 활동을 적극 시행한다.

제 3 조 (품질관리)

1. "을"은 하누소 브랜드 통일성 및 최상의 품질 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준수한다.
 - (1) "을"은 "갑"에서 기준한 모든 제품의 조리 매뉴얼을 성실히 준수한다.
 -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중요 제품의 품질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 (3) "을"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받아 사용하고, "갑"의 공급 및 지정상품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려면 "갑"이 공급하는 제품과 성분이 동일하다는 서면 입증을 통해,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2. "을"은 모든 제품의 조리시간 및 온도를 "갑"이 정한 매뉴얼을 기준하여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제품의 조리시간 및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세팅하고, 조리온도를 준수한다.
 3. "을"은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선입선출을 통해 원부재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당일 판매를 위해 준비한 재료는 작업일자, 시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보관한다.
 4. "을"은 "갑"이 주관하는 기초과정교육 수료자가 반드시 조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 4 조 (주방기기 및 집기비품)

1. "을"은 모든 제품이 최상의 품질로 보관 및 조리되고 고객에게 제공되기 위해 "갑"이 제시하는 기준(규격, 성능, 디자인 등)에 맞는 주방기기를 사용하고 관리한다.
 - (1) 파손된 주방기기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한다.
 - (2) 식기세척기와 냉동냉장고는 3년이 경과하면 교체한다.
 - (3) 기타 가스 그릴러 등은 5년이 경과하면 교체한다.
 - (4) 싱크대 및 작업대 등 일반기기는 7년이 경과하면 교체한다.
2. "을"은 하누소 사업이 운영에 필요한 "갑"이 제시하는 기준(디자인, 성능, 모델 등)과 동일한 장비(POS, 컴퓨터, 음향장치, 포장기기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파손된 장비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한다.
 - (2) 고객 영업차량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경과하면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하여 사용한다.
 - (3) 기타 하누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3년 이상 경과한 물건 등은 성능을 점검하여 교체한다.
3. 주방 기구 교체는 담당 슈퍼바이저의 판단에 따라 연장 사용 가능하다.

제 5 조 (청결 · 위생 관리)

1. "을"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및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점포 운영중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관리한다.
 - (1) 모든 점포근무자는 근무 중에 "갑"이 제시하는 유니폼을 항상 착용한다.
 - (2) "갑"이 제시하는 사용기준(계절에 따른 유니폼 별 사용기간 및 관리기준 등)에 따라 유니폼을 착용하고 관리한다.
 - (3) 모든 유니폼은 점포 근무자당 최소 2벌 이상 비치하여 사용한다.
 - (4) 모든 유니폼은 땀이나 기타 물질 등으로 오염되면 즉시 세탁하고, 다른 것으로 착용한다.
 - (5) 하계(동계)유니폼, 춘추유니폼, 앞치마 등은 매 2일 착용 후 세탁하고, 2년이 경과하면 새 것으로 교체한다.
 - (6) 주방 근무자는 필히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 (7) 수선이 필요한 유니폼은 즉시 수선하여 사용하고, 탈색 및 찢겨진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을"은 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하고, 근무자 전원이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소지하거나 점포에 보관하도록 한다.
3. "을"은 개인위생 및 점포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4. "을"은 감기 등 각종 악성 질병에 노출된 환자의 점포 근무를 절대 금지하며, 근무자의 정기 검진을 통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5. "을"은 "갑"이 공급하는 소독약품을 항상 점포에 준비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집기 및 비품을 소독하여 사용한다.
6. "을"은 본인과 근무자가 운영시간 내에 반바지, 슬리퍼 등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결하지 못한 복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7. "을"은 냉장고, 싱크대, 레인지 및 닥트 등 주방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 6 조 (서비스 관리)

1. "을"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1)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에게 반말과 욕을 하지 않고 접객용어를 사용한다.
 - (2) 고객의 질문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 (3) 고객의 전화에 명랑하고 높은 톤으로 답변하고,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
 - (4) 고객이 주문하는 제품을 선별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
 - (5) 홀 서빙시 친절한 접객용어를 사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한다.
 - (6) 홀 서빙시 제품이 파손 및 오염이 되지 않고 식지 않도록 주의한다.
 - (7) 계산대에서는 항상 잔돈을 준비하고 판촉 및 홍보용품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 (8) 고객의 상품권 또는 쿠폰 제공 요청 및 사용 요청에 친절하게 대응한다.
 - (9) 이전 가맹점에서 발행한 쿠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접수하고 서비스 한다.
 - (10) 서비스 품목의 누락 없이 제공한다.
 - (11) 점포 근무자(직원 및 아르바이트)에게 전화응대 요령, 인사, 예절 등의 서비스 교육과 메뉴에 대한 교육(가격, 특징 등의 정보)을 지속 반복하여 시행한다.
2. "을"은 "갑"의 별도의 노력으로 발생된 단체주문 및 상품권 고객과 각종 이벤트의 당첨고객에 대하여, 일반 고객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을"은 단체주문, 상품권 및이벤트와 관련하여 "갑"이 정한 가격할인 등의 판촉 행사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한다.

3. "을"은 내점고객의 방문 시 근무자의 잡담 및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을"은 고객 클레임 발생시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 (1) 우선 고객의 상태를 점검하고 걱정한다.
 - (2) 고객에게 인적 피해 발생 시 치료를 최우선으로 한다.
 - (3)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과한다.
 - (4) 증거물을 확보하고 담당 S/V(또는 본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다.
 - (5) 고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을 확보한다.

제 7 조 (판촉·홍보)

1. "을"은 "갑"이 진행하는 전국판촉(이하 NSP) 및 홍보물 고지에 반드시 참여하고 성실히 시행한다.
2. "을"은 "갑"이 진행하는 판촉행사 이외에 S/V와 협의하여 가맹점의 개별적인 판촉을 실시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각종 고지물(전단지, 리플릿, DM, 스티커, 배너, 라이타, 볼펜, 책자광고 등)의 디자인과 제품을 공급받아 브랜드 및 점포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4. "을"은 신제품 출시 및 각종 판촉 행사에 필요한 고지물(포스터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홍보 및 행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8 조 (교육·훈련)

1. "을"은 "갑"이 실시하는 기초과정교육에 2명(계약당사자, 실운영자)이 입소하여 교육을 수료한다.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 및 제품의 조리를 할수 없다.

2. "을"은 "갑"이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한다.
3. "을"은 "갑"이 실시하는 모든 회의 및 소집요청에 필히 참석한다.

제 9 조 (영업방침의 변경 및 적용)

영업방침은 하누소 사업 및 가맹점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품질관리 기준 등의 개선에 따라 계약기간 중 POS 공지사항 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영업방침은 변경 즉시 적용된다.

별첨 2

[제_____차 시정조치 / 경고장]

가맹점명 : _____ 점 / 작성일시 : 20____년 ____월 ____일
 대표자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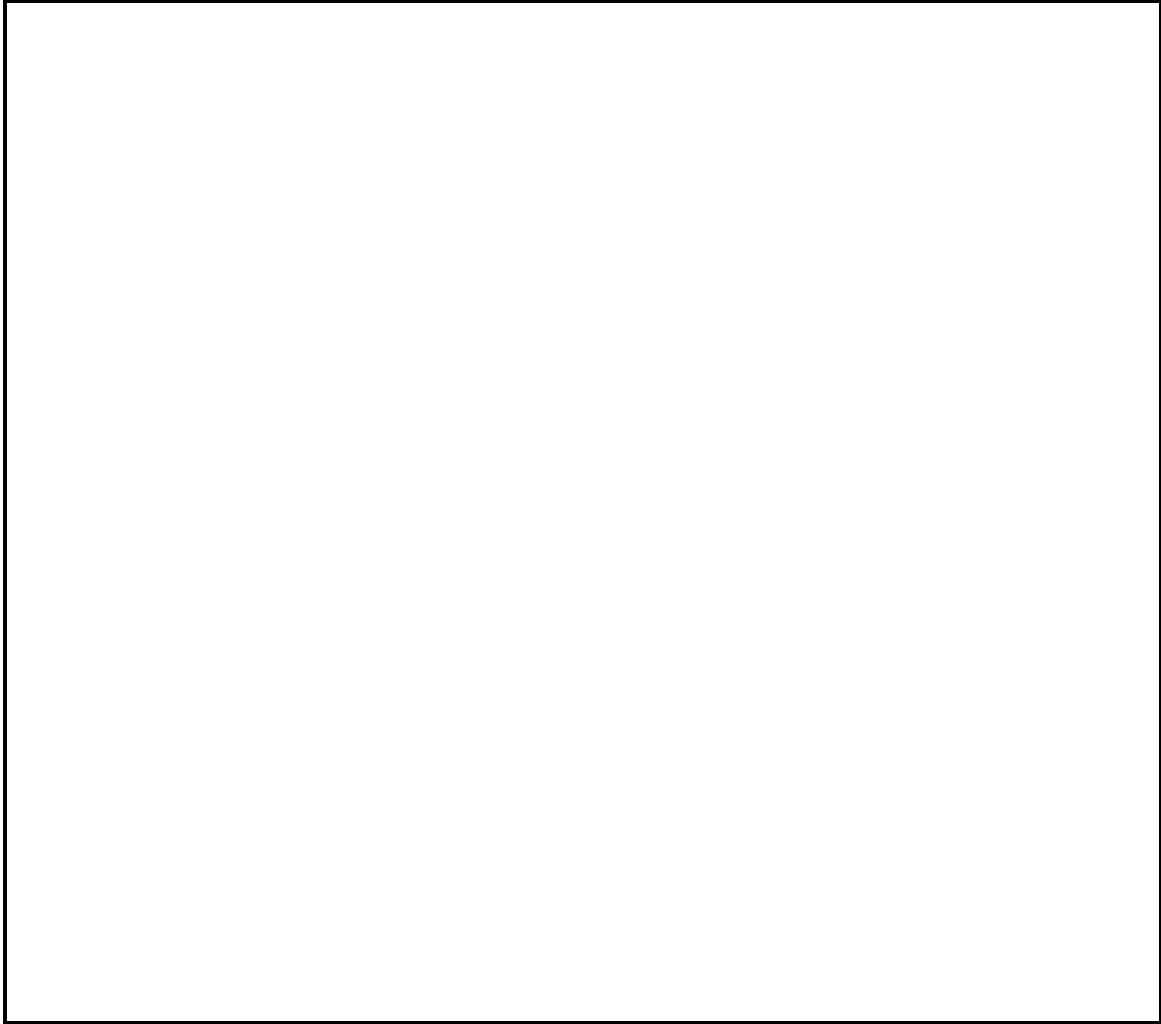
상기 가맹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 / 경고합니다.

- 아 래 -

구 분	내 용
1. 위반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계약서 제_____조 _____. • 영업방침 제_____조 _____. • 기타 _____.
3. 시정기한	즉시 또는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4. 미이행시 조치사항	위 시정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4조 [시정조치 등], 제21조 [계약의 일반적해지], 제22조 [계약의 즉시해지]에 의거하여 물품공급이 중단되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제24조[손해배상]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가맹점 대표	(인)
담당 S/V	(인)

[점포 위치도]



1. "을"은 위 지도 상에 표시된 구역이 본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아님을 인정하며 확인합니다.
2. 위 지도는 "갑"이 위 구역 내에 "하누소"(하누소푸드시스템 계열 브랜드는 포함되지 않음)로 표시되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을"과의 약속을 위한 것입니다.

●광고비 분담 동의서

1. 분담금은 월말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산정하며, 물품 매입액을 근거로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한다.
2. 부과기준
 - (1) 신규개점: 최초 초도 물품 매입액부터 계산하여 익월청구
 - (2) 휴업/이전:
 - [영업중지일 기준] 최종 물품 매입액까지 계산하여 익월청구
 - [영업재개일 기준] 재개된 물품 매입액을 계산하여 익월청구
 - (3) 양도양수: 양도양수 해당월 물품 매입액을 계산하여 익월 청구
3. 부과방식 : 거래명세서 '광고비' 항목으로 기재하며, 산정된 최종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청구한다.
4. “갑”은 광고비 분담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월/1회 “을”에게 홈페이지 또는 문서로 공고한다.

20 년 월 일

가맹점대표자 :

(인)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계약내용에 대해 “갑”과 충분히 협의 검토하였으며, 정보공개서 확인 및 본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사에 납입 한 예수보증금의 권리도 기존 사업자에서 현 가맹점주에게 이관됨을 확인 합니다.

● 가맹본부 (갑)

상 호 : 주식회사 하누소푸드시스템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230번길 11

대표이사 : 장 세 은 (인)

전화번호 : (02) 998 - 8363 ~ 4

● 가맹점 사업자 (을)

상 호 : 하누소 점

가맹점주소 :

자택주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상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서를 2부 (직할 가맹점의 경우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